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면서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가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 1)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 1) 장기요양보험 인정 등급 대상자의 경우 :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범위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유효기간 만료,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쌍방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 3)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급여 등급 인정자 및 자녀(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도 계약할 수 있으며,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 이용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 4)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②개인별 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사본
 - ③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
 - ④신분증(필요시)
- 5)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2025년 1월 1일 기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4.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산정기준 / 1회 방문당(2025년 1월 1일 기준)

분류	급여비용(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본인부담금(15%)	본인부담금(9%)	본인부담금(6%)	
30분이상	16,940	2,541	1,525	1,016	면제(0원)
60분이상	24,580	3,687	2,212	1,475	
90분이상	33,120	4,968	2,981	1,987	
120분이상	42,160	6,324	3,794	2,530	
150분이상	49,160	7,374	4,424	2,950	
180분이상	55,350	8,303	4,982	3,321	
210분이상	61,670	9,251	5,550	3,700	
240분이상	68,030	10,205	6,123	4,082	

5. 방문목욕서비스 급여비용 산정기준 / 1회당(2025년 1월 1일 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86,4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77,9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0원)

6. 기타 비용 부담 등

-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스, 수도,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병원, 일상생활 지원 동행 또는 대행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단, 요양보호사의 결정 권리)

7.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는 다음 사항을 지킬 의무가 있다.

-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①수급자의 안정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③표준 급여 제공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 ①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보호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③방문목욕 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하며, 목욕 서비스와 관련된 질문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 ④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 서비스 이용자(수급자)의 권리
 - ①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②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③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④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받을 권리가 있다.
 - ⑤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신원 인수인(수급자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①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②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③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④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 인수인(수급자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8. 계약의 해지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될) 수 있다.

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③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⑤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판정되었을 경우

⑥이용계약 시 제시된 내용을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

⑦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⑧10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단,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 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⑨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경우

⑩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 또는 기관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급자(보호자)는 제11조 제1항의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3) 기관은 제11조 2항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 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9. 배상책임보험

1) 기관장은 서비스 현장에서 급여제공자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 사망을 입힐 때를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2) 본 기관 배상보험 가입현황

보험가입내용	보험증서번호	가입기간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Ⅱ	2025-533967-000	2025. 02. 20 ~ 2026. 02. 20.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 공제	S2025-529115-000	2025. 02. 20 ~ 2026. 02. 19.

2025. 01. 02.

보듬애재가노인복지센터장